

「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·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은 2014년 개관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교육·체험시설로 시민들의 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.
-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의 위탁기간이 만료(2025. 12. 31.)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의 관리·운영 사무를 구미도시공사에 위탁하고자 함.

3. 제안이유

- 사 무 명: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·운영
- 추진근거 및 필요성
 - 1) 추진근거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 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22조의2
 - 「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
 - 2) 필요성
 -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의 연속성, 안전성, 효율성 확보가 가능한 위탁 추진

○ 위탁시설 개요

- 1) 시 설 명: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
- 2) 위 치: 구미시 금오산로 336-97 (경북 환경연수원 내)
- 3) 규 모: 부지면적 6,400㎡, 연면적 2,389.75㎡
- 4) 주요시설
 - 2층: 사무실, 자연보호발상지 기념관
 - 1층: 로비, 그린스피어, 에코정글랜드, 탄소중립교실, 다목적홀
 - 지하: 미디어체험실, 라이브스케치, 에코하우스, 탄소중립히어로 서약

○ 위탁기간: 2026. 1. 1. ~ 2030. 12. 31.(5년)

※ 2016. 7. ~ 2025. 12.(구미도시공사 위탁 운영)

○ 위탁방법: 위·수탁 협약체결에 의함

○ 소요예산: 608백만원[2026년 예산(안) 기준]

(단위: 천원)

계	인건비	물건비	경상이전	분담금
608,199	316,652	159,549	52,668	79,33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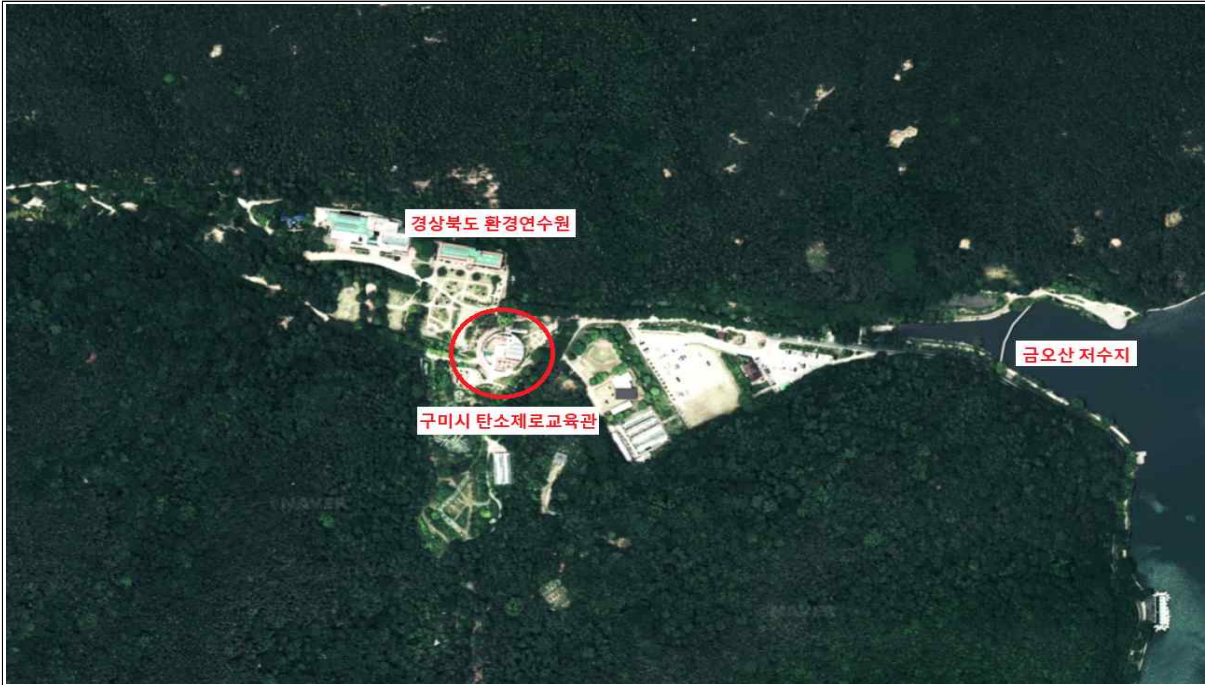
○ 공유재산심의: 가결 ※ 2025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

4. 참고사항

- 사진대지
- 재산 및 시설 현황
- 관계법령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 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22조의2
 - 「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

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사진대지

□ 위치도



□ 사진대지



재산 및 시설 현황

□ 재산현황

구 분		건 물		토 지		비 고	
		동 수	연면적(m ²)	필 지	면적(m ²)		
합 계		1	2,389.75	6	6,400		
공유재산	행정재산	공용재산					
		공공용재산	1	2,389.75	6	6,400	구미시 남통동 200-2, 201-1, 201-2, 202-1, 202-2, 202-3
		기업용재산					
		보존용재산					
	일반재산	행정재산 외 모든 공유재산					

□ 시설현황

위 치	면적(m ²)	주요시설	시 설 내 용 (m ²)
계	2,389.75		
지하1층	942.13	전시실	전시실(560.00)
		기계실 등	방재·전기·기계실(241.36), 분리수거실(10.64), 기타(130.13)
지상1층	916.94	실내 놀이시설	에코정글랜드(220.00)
		교육공간 등	탄소중립교실(65.00), 다목적홀(189.19)
		기타	로비(350.00), 기타(92.75)
지상2층	530.68	사무실 등	운영사무실(92.13), 휴게실(39.96), 탕비실(3.65)
		자연보호운동발상지기념관	전시실 1(68.30), 전시실 2(64.78)
		통신실 등	통신실(23.28), 자료실(17.15), 회의실(30.72), 기타(190.71)
야외		야외 놀이시설	야외 놀이터(100.30)
		부속시설	산책로, 조경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·운영을 구미도시공사에 5년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탄소제로교육관이 기후변화 교육센터로 지정되어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점을 고려할 때,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교육관의 전문성과 기획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·기후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 위탁기간이 5년으로 설정된만큼 운영성과에 대한 중간평가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